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2차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8.5.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05.11(금)입니다.(무주택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가점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적용 비율을 40%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5.11) 현재 용인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용인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기타 경기도(용인시外)에 거주하는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기타 경기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제2항에 따라 일반공급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여 선정하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lottecastl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①번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세대수의 4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
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세대수로 전환함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특별공급 예비자를 우선 배정하며 이후 남는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물량으로 전환하여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주택에 한해 특별공급에 신청한 자는 일반공급 신청도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처리 합니다. 또한, 동일인이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2017. 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인터넷 청약 신청 서비스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반 및 특별공급 모두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접수(인터넷, 은행창구 등)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가산점수, 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 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65세 이상인 자 또는「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 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단,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접수 가능)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기간
– 용인시 성복동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며, 「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8.06.05)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과거 2년 인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투기 적발자 처벌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되는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의 건축 관련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니 관람 및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5.4.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 주택과 - 26002호(2018.05.04)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 급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192-1번지 외 21필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0층 20개동 총 1,09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62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0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22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0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1년 0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대지면적 : 77,150.00㎡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타입	주택형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 지분	공급 세대수	저층 우선 배정 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포함)	계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2018000611-01	84.9500A	84A	84.9500	27.6715	112.6215	48.8079	161.4294	60.0040	247	14
	2018000611-02	84.9100B	84B	84.9100	28.3613	113.2713	48.7849	162.0563	59.9757	366	22
	2018000611-03	101.9400A	101A	101.9400	33.7557	135.6957	58.5695	194.2653	72.0048	36	2
	2018000611-04	101.8200B	101B	101.8200	33.9353	135.7553	58.5006	194.2559	71.9200	192	11
	2018000611-05	116.9300A	116A	116.9300	36.5733	153.5033	67.1820	220.6853	82.5929	89	6
	2018000611-06	116.9500B	116B	116.9500	37.1284	154.0784	67.1935	221.2719	82.6070	71	1
	2018000611-07	132.9500A	132TA	132.9500	41.5519	174.5019	76.3863	250.8882	93.9085	16	
	2018000611-08	132.9500B	132TB	132.9500	41.5519	174.5019	76.3863	250.8882	93.9085	10	
	2018000611-09	135.4000	135T	135.4000	41.8926	177.2926	77.7939	255.0865	95.6391	20	
	2018000611-10	136.2900A	136TA	136.2900	42.1181	178.4081	78.3053	256.7133	96.2677	10	
	2018000611-11	136.6800B	136TB	136.6800	42.4969	179.1769	78.5293	257.7062	96.5432	18	
	2018000611-12	136.6800C	136TC	136.6800	42.4969	179.1769	78.5293	257.7062	96.5432	8	
	2018000611-13	189.3500	189	189.3500	64.1804	253.5304	108.7908	362.3212	133.7464	2	
	2018000611-14	195.2900	195	195.2900	66.6953	261.9853	112.2036	374.1889	137.9420	3	
	2018000611-15	234.6500	234	234.6500	75.9768	310.6268	134.8179	445.4447	165.7438	1	
	2018000611-16	243.9500	243	243.9500	78.4029	322.3529	140.1612	462.5141	172.3128	2	
	2018000611-17	244.5600A	244A	244.5600	80.3975	324.9575	140.5117	465.4691	172.7436	2	
	2018000611-18	244.7100B	244B	244.7100	82.8355	327.5455	140.5978	468.1433	172.8496	1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천원)

주택형 (타입)	동 (라인)	층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 가치세	합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계약후 30일내	2018. 10.23	2019. 03.23	2019. 08.23	2020. 01.23	2020. 05.23	2020. 09.23	입주지정일
84.9500A (84A)	201동,204동,211동,212동,214동,218동,219동1호 202동,205동2호 203동,206동,215동,216동,217동,220동3호	1층	12	344,086	303,914		648,000	10,000	54,800	64,800	64,800	64,800	64,800	64,800	64,800	194,400
		2층	14	344,086	310,914		655,000	10,000	55,500	65,500	65,500	65,500	65,500	65,500	65,500	196,500
		3층	14	344,086	317,914		662,000	10,000	56,200	66,200	66,200	66,200	66,200	66,200	66,200	198,600
		4층	15	344,086	330,914		675,000	10,000	57,500	67,500	67,500	67,500	67,500	67,500	67,500	202,500
		5층이상	192	344,086	340,914		685,000	10,000	58,500	68,500	68,500	68,500	68,500	68,500	68,500	205,500
84.9100B (84B)	202동,203동,205동,206동1호 201동,203동,204동,206동,211동,212동,214동,215동,217동,218동2호 202동,204동,205동,211동,214동3호 202동,205동,206동4호	1층	21	343,926	298,074		642,000	10,000	54,200	64,200	64,200	64,200	64,200	64,200	64,200	192,600
		2층	22	343,926	305,074		649,000	10,000	54,900	64,900	64,900	64,900	64,900	64,900	64,900	194,700
		3층	23	343,926	312,074		656,000	10,000	55,600	65,600	65,600	65,600	65,600	65,600	65,600	196,800
		4층	23	343,926	325,074		669,000	10,000	56,900	66,900	66,900	66,900	66,900	66,900	66,900	200,700
		5층이상	277	343,926	335,074		679,000	10,000	57,900	67,900	67,900	67,900	67,900	67,900	67,900	203,700
101.9400A (101A)	201동,218동 3호	1층	2	412,905	308,268	30,827	752,000	10,000	65,200	75,200	75,200	75,200	75,200	75,200	75,200	225,600
		2층	2	412,905	315,541	31,554	760,000	10,000	66,000	76,000	76,000	76,000	76,000	76,000	76,000	228,000
		3층	2	412,905	321,905	32,190	767,000	10,000	66,700	76,700	76,700	76,700	76,700	76,700	76,700	230,100
		4층	2	412,905	336,450	33,645	783,000	10,000	68,300	78,300	78,300	78,300	78,300	78,300	78,300	234,900
		5층이상	28	412,905	347,359	34,736	795,000	10,000	69,500	79,500	79,500	79,500	79,500	79,500	79,500	238,500
101.8200B (101B)	215동,216동,217동,220동1호 213동,219동,220동2호 212동,219동3호 210동,218동4호	1층	9	412,417	299,621	29,962	742,000	10,000	64,200	74,200	74,200	74,200	74,200	74,200	74,200	222,600
		2층	11	412,417	306,893	30,689	750,000	10,000	65,000	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225,000
		3층	11	412,417	314,166	31,417	758,000	10,000	65,800	75,800	75,800	75,800	75,800	75,800	75,800	227,400
		4층	11	412,417	328,712	32,871	774,000	10,000	67,400	77,400	77,400	77,400	77,400	77,400	77,400	232,200
		5층이상	150	412,417	338,712	33,871	785,000	10,000	68,500	78,500	78,500	78,500	78,500	78,500	78,500	235,500
116.9300A (116A)	207동,208동2호 207동,208동,213동3호 208동4호	1층	6	473,620	335,800	33,580	843,000	10,000	74,300	84,300	84,300	84,300	84,300	84,300	84,300	252,900
		2층	6	473,620	343,981	34,398	852,000	10,000	75,200	85,200	85,200	85,200	85,200	85,200	85,200	255,600
		3층	6	473,620	351,254	35,125	860,000	10,000	76,000	86,000	86,000	86,000	86,000	86,000	86,000	258,000
		4층	6	473,620	367,618	36,762	878,000	10,000	77,800	87,800	87,800	87,800	87,800	87,800	87,800	263,400
		5층이상	65	473,620	379,436	37,944	891,000	10,000	79,100	89,100	89,100	89,100	89,100	89,100	89,100	267,300
116.9500B (116B)	207동,208동,209동,210동,213동1호 207동4호	1층	2	473,701	328,454	32,845	835,000	10,000	73,500	83,500	83,500	83,500	83,500	83,500	83,500	250,500
		2층	2	473,701	336,636	33,664	844,000	10,000	74,400	84,400	84,400	84,400	84,400	84,400	84,400	253,200
		3층	3	473,701	344,818	34,482	853,000	10,000	75,300	85,300	85,300	85,300	85,300	85,300	85,300	255,900
		4층	3	473,701	360,272	36,027	870,000	10,000	77,000	87,000	87,000	87,000	87,000	87,000	87,000	261,000
		5층이상	61	473,701	372,090	37,209	883,000	10,000	78,300	88,300	88,300	88,300	88,300	88,300	88,300	264,900
132.9500A (132TA)	209동,210동 2,3호	2층	2	538,511	342,263	34,226	915,000	10,000	81,500	91,500	91,500	91,500	91,500	91,500	91,500	274,500
		3층	2	538,511	351,354	35,135	925,000	10,000	82,500	92,500	92,500	92,500	92,500	92,500	92,500	277,500
		5층이상	12	538,511	381,354	38,135	958,000	10,000	85,800	95,800	95,800	95,800	95,800	95,800	95,800	287,400
132.9500B (132TB)	209동, 210동 4호	2층	2	538,511	331,354	33,135	903,000	10,000	80,300	90,300	90,300	90,300	90,300	90,300	90,300	270,900
		3층	2	538,511	365,899	36,590	941,000	10,000	84,100	94,100	94,100	94,100	94,100	94,100	94,100	282,300
		5층이상	6	538,511	378,627	37,863	955,000	10,000	85,500	95,500	95,500	95,500	95,500	95,500	95,500	286,500
135.4000 (135T)	209동,210동 2,3호	1층	2	548,431	329,608	32,961	911,000	10,000	81,100	91,100	91,100	91,100	91,100	91,100	91,100	273,300
		2층	2	548,431	337,790	33,779	920,000	10,000	82,000	92,000	92,000	92,000	92,000	92,000	92,000	276,000
		4층	2	548,431	364,153	36,415	949,000	10,000	84,900	94,900	94,900	94,900	94,900	94,900	94,900	284,700
		5층이상	14	548,431	376,881	37,688	963,000	10,000	86,300	96,300	96,300	96,300	96,300	96,300	96,300	288,900
136.2900A (136TA)	209동, 210동 4호	2층	2	552,038	339,056	33,906	925,000	10,000	82,500	92,500	92,500	92,500	92,500	92,500	92,500	277,500
		5층이상	8	552,038	377,238	37,724	967,000	10,000	86,700	96,700	96,700	96,700	96,700	96,700	96,700	290,100
136.6800B (136TB)	209동,210동 2,3호	1층	2	553,615	331,259	33,126	918,000	10,000	81,800	91,800	91,800	91,800	91,800	91,800	91,800	275,400
		3층	2	553,615	349,441	34,944	938,000	10,000	83,800	93,800	93,800	93,800	93,800	93,800	93,800	281,400
		4층	2	553,615	366,713	36,671	957,000	10,000	85,700	95,700	95,700	95,700	95,700	95,700	95,700	287,100
		5층이상	12	553,615	379,441	37,944	971,000	10,000	87,100	97,100	97,100	97,100	97,100	97,100	97,100	291,300
136.6800C (136TC)	209동, 210동 4호	3층	2	553,615	351,259	35,126	940,000	10,000	84,000	94,000	94,000	94,000	94,000	94,000	94,000	282,000
		5층이상	6	553,615	381,259	38,126	973,000	10,000	87,300	97,300	97,300	97,300	97,300	97,300	97,300	291,900
189.3500 (189)	201동, 218동 1,2호 PH	16층, 20층	2	766,952	1,425,498	142,550	2,335,000	10,000	223,500	233,500	233,500	233,500	233,500	233,500	233,500	700,500
195.2900 (195)	202동,205동1,2호PH 206동3,4호PH	16층,19층 20층	3	791,013	1,474,533	147,453	2,413,000	10,000	231,300	241,300	241,300	241,300	241,300	241,300	241,300	723,900
234.6500 (234)	208동 3,4호PH	13층	1	950,441	1,736,872	173,687	2,861,000	10,000	276,100	286,100	286,100	286,100	286,100	286,100	286,100	858,300
243.9500 (243)	209동, 210동 3,4호 PH	15층	2	988,110	1,800,809	180,081	2,969,000	10,000	286,900	296,900	296,900	296,900	296,900	296,900	296,900	890,700
244.5600 (244A)	209동,210동 1,2호PH	14층	2	990,581	1,820,381	182,038	2,993,000	10,000	289,300	299,300	299,300	299,300	299,300	299,300	299,300	897,900
244.7100 (244B)	214동 1,2,3호 PH	14층	1	991,189	1,841,646	184,165	3,017,000	10,000	291,700	301,700	301,700	301,700	301,700	301,700	301,700	905,100

▣ 공통 유의 사항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는 총 56세대로 1층에 필로티 등으로 세대가 없는 경우 그 위층인 2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는 사항으로 별도 계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각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선택은 청약당첨자 분양계약 시 선택 사항입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기타 공용면적 또한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 · 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층으로 간주하여 층과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각 동호별 필로티 높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한 층이라도 바닥 레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 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시 이자후불제조건으로 대출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대출개시일로부터 최초 입주개시일 전일까지의 중도금대출이자를 대납하되, 분양계약자는 잔금 지급시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대출이자를 사업주체에게 지급하며, 최초입주개시일부터는 분양계약자가 직접 중도금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2회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56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한 1순위자의 경우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선납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선납할인율은 공급계약서 참고 요망)
-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84.9500	84.9100	101.9400	101.8200	116.9300	116.9500	132.9500	132.9500	135.4000	136.2900	136.6800	136.6800	189.3500	195.2900	234.6500	243.9500	244.5600	244.7100
약식표기	84A	84B	101A	101B	116A	116B	132TA	132TB	135T	136TA	136TB	136TC	189	195	234	243	244A	244B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등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일반/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으로서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부터 제6호, 제8호(제35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기관추천(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의 별표2)

구 분 (전용면적 기준)	예치금액			해당형 (타입)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4A, 84B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1A, 101B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16A, 116B, 132TA, 132TB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전평형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의 입주자만을 선정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합니다(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청약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적용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한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합니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합니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② ①번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세대수의 4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
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 공급세대수로 전환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타 특별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일반 예비입주자 처리를 준용합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는 계약체결이전 견본주택 방문 자격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약내역과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일치할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기간에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 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입주선정 결과는 개별통지 하지 않고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 발표하며(APT2you, 사업주체),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신청 및 당첨자 선정 일시·장소

면적구분(전용면적)	신청자격	장소	청약접수 일시	당첨자 발표	계약일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비자	www.apt2you.com (국민은행 등 은행창구에서 접수불가)	2018.05.16(수) 08:00~17:30	2018.05.25.(금) • 확인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개별조회) (www.APT2you.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당사 홈페이지 (www.lottecastle.co.kr)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방문접수(견본주택)도 가능합니다(견본주택 청약접수는 2018.05.16(수) 10:00~14:00까지 자격증명서류 구비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입주자만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 특별 공급 세대수

구 분		84A	84B	101A	101B	116A	116B	계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6조)	장애인	12	18					30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4	6					1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4					7
	중소기업근로자	4	6					10
	북한이탈주민	2	3					5
	소 계	25	37					6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0조)	경기도거주자(50%)	12	18	2	10	5	3	50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거주자(50%)	12	18	2	10	5	3	50
	소계	24	36	4	20	10	6	100
신혼부부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1조)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거주자		49	73					122
노부모부양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6조)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거주자		8	10	2	6	2	2	30
계		106	156	6	26	12	8	31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일반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대상세대 : 총 62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은 청약통장 필요 없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노부모/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 등 기타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별 공급 세대수는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1차 특별공급 접수 비율을 적용하여 배정합니다. – 당첨자는 타입별 기관추천 순위가 우선시 됩니다. – 예비자 추천여부는 해당기관에서 결정하며,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예비자 순번은 타 유형 특별공급자와 무작위 추첨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대상자가 청약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세대는 타 유형의 특공 낙첨자(기관 예비자포함)에게 공급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대상세대 : 총 100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청자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인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3명 이상을 둔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합니다.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 및 태아도 포함하며,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수도권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미달시 타 시·도에 배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계	100	-	-	
미성년자녀수(1)	40	5명 이상	40	•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자녀수(2)	15	3명이상	15	• 영유아(태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만 19세부터 기간 적용)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될 경우 본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합니다.(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기타 관련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 대상세대 : 총 122세대)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를 말한다.) 이하일 것
※ 자녀수 산정 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 하여 산정합니다.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관련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②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2017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 분		월평균 소득기준	2017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5인	6인	7인	8인
기준소득 (75% 우선공급)	부부 중 한명이하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5,002,590	5,846,903	6,220,005	6,625,810	7,031,615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003,108	7,016,284	7,464,006	7,950,972	8,437,938
상위소득 (25%)	부부 중 한명이하 소득이 있는 경우	100%~120%이하	5,002,591~6,003,108	5,846,903~7,016,284	6,220,006~7,464,006	6,625,811~7,950,972	7,031,615~8,437,938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130%이하	6,003,109~6,503,367	7,016,285~7,600,974	7,464,007~8,086,007	7,950,973~8,613,553	8,437,938~9,141,100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인 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5인 가구 소득기준액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5,814,200원)에도 불구하고 4인 가구 소득기준액(5,846,903원)을 적용합니다.
※ 8인 초과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405,805원) 추가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청약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신혼부부 우선공급 : 대상 주택 수의 75퍼센트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이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 적용
① 우선공급 75% : 소득기준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120% 이하) ② 일반공급 25% : 소득기준 12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130% 이하)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합니다.
① 제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 (임신중이거나 입양을 포함 - 임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②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자녀수를 산정할 때 이전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3항 각 호에 따른 수도권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함)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재혼인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자로 인정되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세무서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국민연금 미가입시)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 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접수장소

※ 기타 관련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이내 / 대상세대 : 총 30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세대 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하고자 하는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된 자 중 그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동점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 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합니다.(견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관련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수탁자)	시공회사
상 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롯데건설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10111-1492513	110111-0014764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 (분양문의 : ☎ 1644-9322)

▣ 분양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www.lottecastle.co.kr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실(견본주택 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LOTTE CASTLE

5월 11일 GRAND OPEN

|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2차 분양일정 |

구분	공급	일정	신청	장소
특별공급	일반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거주자 50%,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거주자 50%) 신혼부부특별공급 /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거주자)	05월16일(수)	인터넷 신청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만 65세 이상 노약자 및 장애인의 경우에만 견본주택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 (85㎡이하 / 85㎡초과)	05월17일(목)	인터넷 신청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2순위 (전 주택형)	05월18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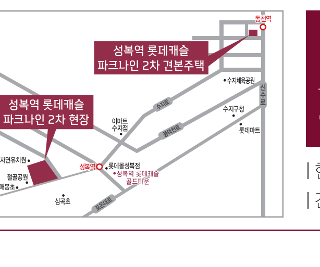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2차 견본주택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2차 현장

1644-9322

총1,094세대 84~244㎡ (전용면적)

| 현 장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192-1번지 외 21필지
| 견본주택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

※본 홍보물의 이미지컷, CG, 내용, 일러스트, 설계 관련자료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개발 예정 자료이거나 사업까지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업진행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지 주변의 개발계획은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정부시책에 따라 개발사업의 조정 및 변경됨은 본 사업자와 무관하며 민형사상 책임이 없습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규모: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0층 20개동 총 1,09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위치: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192-1번지 외 21필지

한국서비스대상 아파트 부문 16년 연속 수상!